

중 신 연 금 노 협 약 관

제 1 조 (보험의 내용)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약관의 정한에 따라 되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보험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다음과 같이 연금 또는 사망급부금을 드립니다.

1. 생존연금 지급 개시일 이후 매년 ~~기~~ ^연급일에 살아 있을 때 :

매년 계약 등당일에 계약 연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 하여 드립니다.

2.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또는 생사불명한 경우로서

실종신고를 받았거나 회사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 :

기납일 보험료의 전액을 사망급부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생존연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하여 사망한 때에는 사망급부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생존연금 지급 개시일 전에 별표 1에 정한 1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장해상태가 된 날로부터 생존연금 지급 개시일 까지 매년 계약 연금액을 장해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4. 보험료 납입 기간 안에 별표 1에 정한 1급, 2급 또는 3급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다음 보험년도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회사의 책임기간) ① 회사는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하 합니다)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때
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 1 회 보험료
가수증을 고부하고 제 1 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후에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때
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보험증권의 교부는 승낙의 등지로 봅니다.

또한 제 1 항 단서의 경우 청약서가 회사에 접수된 날로 부터
15일이 경과되면 회사가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 상당액을 받고 청약을 거부한 경우
에는 거부 등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 경우 보험
료 상당액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기~~환~~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합니다.

제 3 조 (가입자가 회사에 알리야 할 의무)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청약을 승낙
하기 전에 위험특정상 필요하고 보험사고 발생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소정 양식의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서에 특별히 표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전 ~~3~~ 3년 이내에 있었던 사실에
한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의 또는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 항의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사고 발생전후를 불문하고 회사는 기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증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

③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학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사고 발생후 해지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4 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생존하고 있는 동안 보험증권에 정한 납입방법에 따라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증권에 표시한 납입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거나, 회사가 발견한 집금원에게 납입하며,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 5 조 (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 2 호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유예기간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를 유예기간의 만료일 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7일 이내에 계약의 실효를 예고하고, 그후 15일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납입일 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하여 회사 소정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계약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실효됩니다.

• 제 6 조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을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날 까지 연체된 보험료와 이에 대하여 회사 소정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은 부활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 7 조 (사망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사망급부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 또는 부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하거나 자살행위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상태

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사망급부금 또는 장해연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장해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죄사는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사망급부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사망을 노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18세 미만자, 실신 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인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②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며, 제 3 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죄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은 서면통지 또는 보험증권 배서의 방법에
의합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보험료의 납입기간
3. 연금액의 감액
4. 계약자 또는 수익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1)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3 호의 연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금 하여야 할 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금 장래의 보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
에게 드립니다.

(2) 계약자가 제 1 항 제 4 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급부금 또는 연금의 지급자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4)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있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그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하는
회사기정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의 청구) 수익자

는 제 1 조에 정한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
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소정의 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의 경우)
3. 상해진단서(상해의 경우)
4. 피보험자와 토작초본(연금청구의 경우)
5. 보험증권
6. 수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본인에 한함)
7. 기타 수의자가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 조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 10 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3일 이내에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을 드립니다.

다만, 사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20일 이내
에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또는 사망급부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지정한 지급기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 일수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연금, 또는 사망급부금에 가산
하여 드립니다.

③ 제 4 호 제 3 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월 보험료가
있으면 이를 차감할 장해연금에서 공제합니다.

제 12 조 (환급금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이 연금지급 개시전
에 해지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제 3 조 제 2 항, 제 5 조 제
2 항,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제 9 조 제 2 항 및 제 4 항)
회사는 다음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3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환급금(별표 2 "해약환급금"에서 표 참조)을 계약자
에게 드립니다.

1. 회사 소정의 환급금 청구서

2.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본인에 한함)

3. 보험증명

4. 기타 계약자가 환급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납입기간 중 해약일 때에는
해약일 까지 노힐료가 납입된 것으로 합니다.

③ 제 5 항에 의한 환급이 지원되는 경우 제 11 조 제 2 항
의 요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진정 기타 변란시의 보험료 납입면제, 장해연금 또는
사망급부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진정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
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장해연금 또는 사망급부금을 감액

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날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대표자의 지정변경)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인~~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그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15 조 (계약자에 대한 배당)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자에 대하여 확정배당금과 매사일연도말
발생한 이익 잉여금 중에서 이익배당 준비금을 차립합니다.

② 제 1 항의 의하여 차립한 확정배당금은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하고~~ 이익배당금은 별도로 재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하여
드립니다.

제 16 조 (계약자 대부) 계약자는 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의
별워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분쟁조정) 이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보험~~부록~~ 분쟁 실의 위원

회의 심의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청구권의 시효) 연금, 보험료 납입면제, 사망급부금, 해약환급금 기타 원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의 청구권은 그 지급시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제 19 조 (계약자의 주소 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통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 1 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발송한 통지가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20 조 (보험증권의 재고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비서, 재고부 등을 해 드립니다.

- 제 3 급의 2부터 4 까지 중 또는 제 4 급의 1부터
5 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 팔을 손목 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 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조합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한가지 한 기형 또는 운동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도지 및 시지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를 조합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 가락을 완전 양구하 사용하지 못하기 텐데

7. 한발의 5발 가락을 놓았을때

별표 2

해약환급금예시표

피보험자연령 : 45세
 기약연금액 : 10만원
 기준 : 월납기준

	1 종		2 종		3 종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월	4,845	0	2,461	0	1,490	0
6개월	29,070	0	14,766	0	8,940	0
9년	58,140	20,802	29,532	0	17,880	0
3년	174,420	137,325	88,596	45,499	53,640	8,108
5년	290,700	280,973	147,660	107,631	89,400	37,046
7년	406,980	406,980	206,724	185,840	125,160	73,210
10년	581,400	581,400	295,320	295,320	178,800	145,620
15년			442,980	442,980	268,200	268,200
20년					357,600	357,600

(본예정금액은 예상이며 실제환급금은 달라질수있습니다)

1981. 7. 10 개정

[재해보장특약 약관(제 1 종)]

제 1 조【특약의 내용】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약의 정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별표에 정한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질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계약 보험 금액의 전액을 보험수익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드립니다.

가.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나.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다.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토록 할시 간호를 요할 때.
라.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토록 할시 간호를 요할 때.
마.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바.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사.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아.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 2 조【특약의 체결 및 회사의 책임기간】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체결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 계약의 계약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 계약에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 기간은 주 계약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 2 항의 경우에는 회사의 특약승낙일로부터 주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제 3 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 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 개시일로부터 주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②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까지 주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4 조【특약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실효가 됩니다.

제 5 조【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때에 한하여 주 계약 약관의 부활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구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특약의 소멸】 ① 제 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 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자동 소멸됩니다.
② 주계약이 해약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7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폐질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행위로 인하여 폐질 상태가 되었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질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폐질 상태가 되게 하였을 경우.
②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

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제 8 조 [특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해약환급금은 없읍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9 조 [보험금의 청구] 수의자는 제 1 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상해진단서.
4. 보험증권.
5. 수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본인에 한함)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 나.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8.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가. 세제유지 및 구리스옥제 기타의 화학 물질에 의한 접촉 피부염.
 - 나. 살모내라성(Salmonella 성) 식중독.
 - 다. 세균성 식중독(포도상구균성 *Bottlinus* 성)
기타 원인불명의 세균성 식중독.
 - 라.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까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가. 과도의 고온.

〈주 기〉

1. 「종신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한눈씩 고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상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을 경우를 말한다.
 - ① 어음구성 기능장애로서 구저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② 뇌언이 종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③ 성대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

6. 불의의 사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7.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0 조 [주계약의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나. 고압 및 저압.

다.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징해.

라. 기아, 갈 불량환경 폭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13. 기타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가.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나.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연하장해 또는 정신신경장해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을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다.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가. 질병의 진단목적.

나. 질병의 치료목적.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폐질.

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17. 전쟁행위에 의한 폐질.

18. 전염병 예방법 제 2 조 제 1 종에 규정한 질병.

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합니다.

5. 「척추의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현저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현저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 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재해보장특약 약관(제2종)]

(재해입원급부금부)

제 1조【특약의 내용】 ① 우리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약의 정함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별표에 정한 불의의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액을 보험 수의자(이하 '수의자'라 합니다)에게 드립니다.

사유별 약정보험금표

1. 특약기간중 사망하였을 때		계약보험금액의 전액
1. 급	"	100%
2. 급	"	70%
3. 급	"	50-
4. 급	"	30-
5. 급	"	15-
6. 급	"	10-
3. 특약기간중 입원하였을 때	1일당 계약보험금액의 1.5/1,000	

* 1. 상기의 총 급부금은 계약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2. 입원급부금의 지급은 재해로 인한 입원의 경우에 한하며, 상해급부와는 별도로 입원비, 보조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상해 또는 입원급부금이 지급된 후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상해 또는 입원급부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③ 제 1항에 의하여 특약기간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중에 두 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각각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 만을 드립니다.

④ 제 3 항에 규정한 상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불

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을 피보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상해급부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상해급부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해급부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⑤ 제 3 항에 있어서 그 불의의 사고전에 이미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4 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상해급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 4 항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상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전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상해급부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상해급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 ⑥ 제 1 항에 의하여 특약기간중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특약기간중의 입원일수는 계속 5일 이상 입원하여야 하며, 동일 사고에 대하여 통산 입원일수는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 4 조【특약보험료 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실효가 됩니다.

제 5 조【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때에 한하여 주계약약관의 부활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구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특약의 소멸】 ① 제 1조 제 1 항의 경우 보험금 지급액의 합계액이 통산하여 100%에 달하면 제 3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은 자동 소멸됩니다.

② 주계약이 해약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7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되거나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살하거나 자행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또는 입원하였을 경우.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입원하게 하였을 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은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입원하게 하였을 경우.
2. 회사는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특약내용의 변경 및 해약】 ① 계약자는 특약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전에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정의 해약 환급금은 없습니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배서하여 드립니다.

제 9조【보험금의 청구】 수의자는 제 1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고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회사소정의 보험금 청구서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3. 상해진단서
4. 보험증권
5. 수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본인에 한함)
6. 불의의 사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입원한 병원 또는 친료소의 입원증명서(입원한 경우)
8. 기타 수의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① 외용의 또는 악물집속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등
② 질병의 진단 치료의 목적

기타의 고체 및 액체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세제유지 및 구리스뮴제 기타의 화학물질에 의한 접촉피부염
- ② 살모내라성 (*Salmonella*성) 식중독
- ③ 세균성식중독(포도상 구균성 *Botulinus*성)
- ④ 알레르기성 식이성 또는 중독성 위장염이거나 대장염

9. 가스 및 연기에 의한 불의의 사고

10. 불의의 추락

11.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12.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도의 고온
- ② 고압 및 저압
- ③ 여행 및 신체동요에 의한 장해
- ④ 기아, 갈, 불량환경 쪽로 및 방치증의 기아, 갈

기타 불의의 사고

제10조【주계약의 약관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분류항목〉

1. 철도에 의한 사고.
2. 자동차 교통사고.
3. 자동차 비교통사고.
4. 기타 도로 교통기관 사고.
5. 수상 교통기관 사고.
6. 항공기 및 우주 교통기관 사고.
7.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과로 및 격동증의 과로
- ②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연하장해 또는 정신 신경장해상태가 있는 자의 음식물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③ 기타 물체의 흡입 또는 연하에 의한 폐색 및 질식
- 14.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의 합병증 및 사고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 ① 질병의 진단 목적
 - ② 질병의 치료목적
- 15.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폐질
- 16. 법적개입(다만 처형은 제외한다)
- 17. 전쟁행위에 의한 심해
- 18. 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주 기〉

1. “종신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식 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 “말 또는 씹어먹는 것의 장해”

가. 입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어음구성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덧셈으로 했을 때 $\frac{1}{6}$ ($a+2b+2c+d$)의 값이 80㏈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

한 경우를 말한다.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연골의 $\frac{1}{2}$ 이상의 결손된 경우로서 양측의 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능한 경우를 말한다.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견관절, 팔꿈치 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7. “척추의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현저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현저한 운동장애”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굽하기 및 좌우굽기 및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질간 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질간 관절(모지는 말절의 $\frac{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 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모지는 지질간 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frac{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 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 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견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 관절이하, 견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고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관절이하, 고관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경추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 등급표중 제 1급의 5, 6, 7 또는 8 제 2급의 1, 2, 3 제 3급의 5 또는 제 4급의 6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 팔과 한다리 10 손가락 또는 10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2 2) 상해등급 분류표

1 급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토록 항시 간호를 요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를 남겨서 종신토록 항시 간호를 요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급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한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1. 한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을 손목이상 잃었거나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4 급	남겼을 때.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5 급	3.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손의 모지 및 시지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5	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급	남겼을 때. 1.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4. 한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 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5 급	3.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4.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손의 모지 및 시지이외의 한손가락 또는 두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